

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전국 공설봉안시설 평균 사용요금보다 구미시공설송조당 사용요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, 2018년 공설송조당 2관의 개관예정임에 따라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장사시설 사용료(안 별표 2)

- 공설송조당 사용요금을 사용료로 일원화
- 사용료 인상 : 관내 200천원, 관외 700천원
※ 2008년 1월 사용요금 인상(관내 100 → 120, 관외 200 → 300)
- 부부단실 신규 설치 : 관내 300천원, 관외 1,100천원

◆ 구미시공설송조당 사용료 (단위 : 천원)

구분		관내			관외			비고
		계	사용료	관리비	계	사용료	관리비	
일반실	현행	120	80	40	300	220	80	
	개정	200	200		700	700		
	증감	80	120	-40	400	480	-80	
부부단실		300	300		1,100	1,100		신설

※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(2017. 3. 28)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미시공설송조당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미시공설송조당 사용 신청 및 사용 기간연장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구미시공설송조당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미시공설송조당 일반실 사용 기간연장 신청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2]

장사시설별 사용료 (제9조 관련)

1. 구미시공설묘지 (30년)

(단위: 원)

명 칭	사용료		관리비	
	기준	금액	기준	금액
구미시 옥계공설묘지	1제곱미터	24,000	기당1년	2,000
구미시 선산공설묘지	1제곱미터	24,000	기당1년	2,000

※ 구미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금액의 배액을 가징한다.

2. 구미시공설충조당 (15년)

(단위: 원)

구분 실별	사 용 료		비 고
	관 내	관 외	
일 반 실	200,000	700,000	
부부단실	300,000	1,100,000	
무연고실	60,000	150,000	
외국인실	120,000	300,000	

※ 관내 · 관외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.

3. 구미시추모공원

(단위: 원)

구 분	기 준		사 용 료		비 고
			관내	관외	
화장 시설	일반 사체	15세 이상(1구)	100,000	600,000	
		15세 미만(1구)	80,000	350,000	
	죽은태아(1구)		40,000	170,000	
	개장유골(1구)		60,000	250,000	
유택동산	1구		10,000	10,000	

※ 죽은 태아는 사산증명서를 발급받은 태아를 말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생략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~ 바. 생략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~ 차. 생략

3. ~ 6. 생략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3조(공설묘지 등의 사용료·관리비의 부과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·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

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,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, 시설물 설치·조성비용,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.

③ 생략

소관 실 · 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류 은 주
	담 당	권 혁 성
	담 당 자	배 미 영 (480-5187)